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박범계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소관)

● 법률 제18836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7명 이상”을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2주”를 각각 “1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서가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판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함께 임명된 다수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등 재판관의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전자송달 시 송달받을 자가 전자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30일이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바, 미비한 적법요건을 보완하라는 전자적 보정명령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가 심판회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실무상 사전심사기간 내 전자적 보정명령 통지를 확인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현행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개정함(제16조제2항).

나.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제78조제4항 단서).

<법제처 제공>